

# 도 보



제630호. 2017. 1. 4.(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 목 차

### 입법예고

제2017-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u.go.kr](http://www.jeu.go.kr)) 입법·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 시

제201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고시 ..... 4  
 제2017-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서귀포시 보목동1513-1) ..... 4  
 제2017-5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서귀포시 서호동1440번지) ..... 5

### 공 고

제2017-6호 2017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선정 재공고 ..... 6

회									
람									

## 제 주 시

제주시 고시 제2016-384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고시 .....	9
제주시 공고 제2016-2812호 도로 지정 공고 .....	11
제주시 공고 제2016-2822호 도로 지정 공고 .....	12
제주시 공고 제2016-2825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13
제주시 공고 제2016-2826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14

##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고 제2016-2312호 혁신도시~법환간(대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16
--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및 기반시설 등의 교육 분야 수요 증가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할 것을 협의함에 따라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특별법 전부개정('15.7.24.)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세 전출금 확대를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6.12.13)으로 전출시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전출시기 조항은 삭제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전화 및 전송 : (064) 710-3628, Fax (064)710-2709  
- E-mail : kaj77@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7. 01 .04.~ 2017. 01. 24.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고시**

「주택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제주-주택 2015-0005	이 계 영	제주시 연오로 47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20166.12.28)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

2. 처분일자 : 2017. 1. 9.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4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 행 자	법 인 명	
	대 표 자	김 정 *
	등록번호	
	주 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3
시 행 목 적	서귀포시 보목동1513-1번지 일원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 행 지 역	서귀포시 보목동1513-1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E관 D300mm) L=291m	
공 사 기 간	2017. 1 ~ 2017.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TEL 064-710-4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5호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시행자	법인명	최 선 *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시행목적	서귀포시 서호동1440번지 일원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른 발생오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로 신설	
시행지역	서귀포시 서호동1440번지	
공공하수도 규모	오수관 부설(PE관 D300mm) L=69m	
공사기간	2017. 1 ~ 2017. 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TEL 064-710-4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6호

2017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선정 재공고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7년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 1. 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마을기업 중간지원 기관 이란?

-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관임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12. 31일까지
- 사업비 : 78백만원
- 공고기간 : 2017. 1. 2(월) ~ 1. 18(월)
- 중간지원기관 역할

- 설립 전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 마을기업 선정 지원,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홍보 및 교육 등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이어야 함
-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역량이 있고,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역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도 참여가능
  - 마을기업협의체(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마을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단체)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 할 수 없음
-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춘 실무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 참여인력은 4대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 직원 입증 필요
- 마을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통해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입증 할 것
  - \* 필요한 경우,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정

4. 중간지원기관 역할

- 설립 전 교육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설립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및 확산
    - 지역특산물, 자연자원, 인적자원, 축제 등 지역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사업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역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
- 마을기업 선정 지원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제도 설명, 사업계획 수립지원, 회계교육 등 개별 컨설팅 실시
  - 마을기업 지원 대상 심사·선정 시 사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각 심사단계별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
-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의 경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
    - 기업별 경영자문단이 구축된 경우에는 경영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법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제공
  - 최소 분기 1회 이상(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 1회) 마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 사업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서비스 수요,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마을기업 경영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DB 구축·관리
    - 개별 마을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경영지원의 연속성 확보
  -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회계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연말 회계정산, 부가세 환급 등 지원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판로개척 및 확대 지원

-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촉진 교육 실시
- 지역 유통점과 연계한 각종 판매 행사 및 마을기업 입점 지원
- 마을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 정부부처, 자치단체, NGO, 종교단체, 기업, 학계,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및 재능나눔 pool, 마을기업협회 등
- 우수마을기업과 신규 및 자립지원 필요 마을기업 간 협력 지원
  - 우수마을기업을 멘토로 지정하여 경영 능력 및 판로 지원 노하우 등을 신규 마을기업 등에 전수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 기타 필요한 업무

-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지원
- 마을기업 폐업 시 현장 실태조사 및 폐업절차 지원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자립형 마을기업 및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홈페이지에 지역별 활동 현황, 공지사항 등 정기 게재
- 기타 행사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 등이 마을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선정기준

- 전문성, 지역자원 연계능력, 사업의 특화성, 사업계획과 관련한 참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등 협상에 의하여 협약 체결, 협상 결렬 되면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6.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7. 1. 2(월) ~ 1. 18(수) 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나. 구비서류

- |                                     |                      |
|-------------------------------------|----------------------|
|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              |
| ③ 단체소개서                             | ④ 마을기업 지원기관 제안서(10부)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 ⑦ 법인허가증(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                      |
| ⑧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                      |

7.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중간지원기관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710-2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고시 제2016-384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고시

제주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얻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그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제 주 시 장

아 래

1. 사업현황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시행 위치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 시설 (도로) 사업	삼양~화북간(중로 2-9)해안도로개설	L = 730m B = 15m	제주시 화북1동, 삼양3동	2010.4.7. ~ 2016.12.31	2010.4.7. ~ 2018.12.31	사업기간 변경
	삼양3동포구~화북간 (중로3-1-29) 해안도로 개설사업	L = 450m B = 12m	제주시 삼양3동	2011.5.18.~ 2016.12.31	2011.5.18.~ 2018.12.31	사업기간 및 토지조 서 변경,
	시민복지타운~연북로간 (중로2-1-45호선) 도로확장공사	L = 620m B = 15m	제주시 도남동	2012.4.4. ~ 2016.12.31	2012.4.4. ~ 2017.12.31	사업기간 변경
	시민복지타운~오등간( 중로2-1-45호선)도로 개설사업	L = 680m B = 15m	아라동~도 남동	2007.6.14 ~ 2016.12.31	2007.6.14 ~ 2017.12.31	사업기간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삼양~화북간(중로2-9)해안도로개설 : 변경없음

나. 삼양3동포구~화북간(중로3-1-29)해안도로 개설사업 : 붙임조서 참조

다. 시민복지타운~연북로간(중로2-1-45호선) 도로확장공사 : 변경없음

라. 시민복지타운~오등간(중로2-1-45호선)도로개설사업 : 변경없음

토 지 조 서

사업명 : 삼양~화북간(중로3-1-29호선)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읍면동	소재지 지 번	분 할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삼양삼동	2619	2619-2	임야	277	69		박복희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7-1				
2	삼양삼동	2622-9	2622-17	전	463	194		양용원(1/2) 양용호(1/2)	서귀포시남원읍신례중앙로59 서귀포시남원읍중산간동로7141번길21				
3	삼양삼동	2624-1	2624-8	임야	1,120	184		이한권	제주시 화삼로 167, 301동 603호(삼양이동, 삼화부영3차)				
4	삼양삼동	2624-2	2624-9	전	957	142		이한권	제주시 화삼로 167, 301동 603호(삼양이동, 삼화부영3차)				
5	삼양삼동	2626-5	2626-9	전	404	118		고행철	제주시 동문로 38-4(일도일동)				
6	삼양삼동	2626-7	2626-11	전	16	10		강정춘(360/720) 김영재(360/720)	제주시남광북3길20,302호(이도이동,성하빌라) 제주시조천읍조천북1길35-3				
7	삼양삼동	2639	2639-1	묘지	106	33		허록	사정				
8	삼양삼동	2640	2640-2	대	472	38		강영우	제주시 진동로3길 32, 301호(화북일동, 대경빌라)				
9	삼양삼동	2644	2644-2	대	520	50		한미옥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68(청학동, 영도자동차학원)				
10	삼양삼동		2644-1	대	75	75		한미옥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68(청학동, 영도자동차학원)				
11	삼양삼동	2652-1	2652-6	대	283	2		부항자	제주시 원남6길 12, 403호(도남동, 정원파인즈11차)				
12	삼양삼동	2622-10		전	71	71		양용원(1/2) 양용호(1/2)	서귀포시남원읍신례중앙로59 서귀포시남원읍중산간동로7141번길21				
						986							

제주시 공고 제2016-281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제 주 시 장

-아 래-

1. 제 목 :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도로지정 내역

위 치	도 로 현 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비고
	너비(m)	길이(m)	면적(㎡)			
애월읍 상귀리 32-1	약4m	약15m	31	김지*	-	※도로지정심의 특
애월읍 상귀리 31-3			28	제주특별자치도	-	

4. 공고기간 : 2016.12. 28. ~ (공고일로부터 15일)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관계도서 : 제주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제주시 건축과(☎ 064-728-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공고 제2016-2822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도로지정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제 주 시 장

-아 래-

1. 제 목 :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도로지정 내역

위 치	도 로 현 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비고
	너비(m)	길이(m)	면적(㎡)			
제주시 노형동 64-9	약 6m	약 20m	295	부선*	동 의	※도로지정심의 득
				임일*	-	
				강경*	동 의	
				강은*	동 의	
				공재*	-	

4. 공고기간 : 2016.12. 30. ~ (공고일로부터 15일)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관계도서 : 제주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제주시 건축과(☎ 064-728-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도



제주시 공고 제2016-2825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97	(주)씨스카이투어	김상훈	제주시 연동4길 6-2, 2층(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 위반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2.(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30.

제 주 시 장

제주시 공고 제2016-2826호

**일반여행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별기준 가목의 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일반여행업	219	투어어드바이저(주)	문정훈	제주시 제원4길 21, 101호(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항 위반(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6. 공고기간 : 2016. 12. 30. ~ 2017. 1. 12.(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30.

제 주 시 장

서귀포시 공고 제2016-2312호

**혁신도시~법환간(대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시행하는 “혁신도시~법환간(대로3-5호선)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1.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	사업명	사업의 규모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혁신도시~법환간 (대로3-5호선)도로개설사업	도로연장 : 750m 도로 폭 : 25m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계획평면도 :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2016. 12. 29. ~ 2016. 1. 13.(16일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 토지·물건조서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6. 보상방법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라.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위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 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나. 열람결과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8.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과 【☎ 064-760-2984, fax 064-760-2979】

9. 토지조서

○ 사업명 : 혁신도시~법환(대로3-5호선)간 도로개설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법환동	561	2,513	561-4	과	68	강광남	서귀포시 법환동 561				지분 240/2584	
							최재룡	제주시 연동 288-10				지분 1200/2584	
							최홍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144,407동302호 (정자동,정든마을)				지분 1144/2584	
2				561-5	과	3	강광남	서귀포시 법환동 561				지분 240/2584	
							최재룡	제주시 연동 288-10				지분 1200/2584	
							최홍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144,407동302호 (정자동,정든마을)				지분 1144/2584	
3		561-3	1,227	561-6	과	1,145	엄성민	제주시연동1399-1대림아파트 203동901호					
4		562-3	295	562-3	전	295		제주특별자치도					
5		564	3,002	564-1	과	1,010	변순옥	서귀포시 호근동 1852-2					
6		574	2,631	574-1	임	158		제주특별자치도					
7		577	436	577-1	전	380	양승만	서귀포시 법환동 458					
8		576	40	576	묘	40	현두만	남원읍 하례리				사정토지	
9		578-1	3,722	578-3	전	67		제주특별자치도					
10		578-1	3,722	578-4	전	121		제주특별자치도					
11		581-3	53	581-7	전	12		제주특별자치도					
12		581-4	130	581-8	도	124		제주특별자치도					
13		582-2	20	582-3	도	8		제주특별자치도					
14		582-1	7	582-1	묘	7		제주특별자치도					
15		581-1	1,686	581-5	전	1,209		제주특별자치도					
16		580	33	580	묘	33	현효공	-				사정토지	

도보 제630호 2017년 01월 04일(수요일)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분할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654	3,550	654-1	과	83	남도현	성남시분당구수내동24 양지마을518-805				1/2지분
							김희정	성남시분당구수내동24 양지마을518-805				1/2지분
18		652	1,025	652-1	과	591	강시창	서귀포시 법환동 521				
19		650	2,261	650-1	과	1,294	제주특별자치도					
20		651	69	651-1	묘	68	제주특별자치도					
21		648	2,995	648-1	과	183	제주특별자치도					
22		646-1	3,190	646-4	과	202	제주특별자치도					
23		644-1	990	644-3	과	391	제주특별자치도					
24		644	990	644-2	과	340	김민숙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한터로 848번길110-1				
25		670	2,149	670-1	전	713	제주특별자치도					
26		671	83	671	묘	83	제주특별자치도					
27		673	2,714	673-1	전	722	제주특별자치도					
28		674	106	674-1	묘	88	이병주					사정토지
29		668	3,881	668-1	과	1,177	제주특별자치도					
30		698	4,420	698-1	과	1,579	제주특별자치도					
31		666-2	4,893	666-3	전	1,614	제주특별자치도					
32		699	393	699-1	과	21	제주특별자치도					
33		711-3	68	711-3	전	68	제주특별자치도					
34		711-4	846	711-10	전	389	제주특별자치도					
35		713-6	216	713-6	과	216	이상노	서귀포시 일주동로 9143(법환동)				
36		714-3	4,588	714-5	전	2,113	제주특별자치도					
37		714-4	387	714-7	대	321	제주특별자치도					